

개인(신용)정보보호 처리방침

제정 2018. 07. 17.

개정 2023. 01. 04.

개정 2026. 01. 27.

하이즈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합니다)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① 본 방침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합니다.
- ② 본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금융투자상품 거래관계 설정 시 본인 확인 및 본인의사 확인
- 2. 금융투자상품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3. 투자자정보 확인 및 적합성·적정성 판단
- 4. 운용보고서, 거래내역서 등 법령상 제공의무 이행
- 5. 고지사항 전달, 민원처리 및 분쟁해결 등 고객과의 의사소통
- 6. 자금세탁방지,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법령상 의무이행
- 7. 내부통제, 감사, 리스크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조사
- 8. 통계작성, 연구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당사는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1. 필수적 정보

가.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함)

나. 개인식별정보 : 성명, 국적, 직업, 주소(주택·직장 등),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거래매체 관련 정보(IP주소, 매체식별번호, 매체종류, MAC주소 등)

다. 금융거래정보 : 거래증권사 및 계좌번호, 거래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라. 투자자정보 :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금융소득, 투자성향 등 적합성·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

마. 기타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하여 상담, 투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2. 선택적 정보

가. 필수적 정보 외에 정보주체가 임의로 제공한 정보 : 학력, 경력, 주거 및 가족사항, 생일, 가입경로, 결혼 여부 등

② 제1항 제1호 가목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 1]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동의)

① 당사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리 근거에 따라 수집·이용하며,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의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주체가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관계의 설정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의 선택적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며, 정보주체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보주체가 선택적 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철회 이전에 이루어진 처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⑤ 동의 철회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당사의 「신용정보활용체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당사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근거한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있는 경우로서,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분쟁의 처리, 권리구제 또는 민원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보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보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④ 전자금융거래기록, 투자권유 관련 자료, 고객확인자료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하며, 그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당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처리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당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또는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명정보 포함)로 제공하는 경우
- ④ 당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공 요건, 절차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4. 동의 철회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FAX)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다만,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삭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안내합니다.

④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대리인의 권한 확인을 위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요구, 정기적 통지 요청,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동의 철회, 마케팅 목적 연락중지 청구 등)의 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신용정보활용체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⑦ 당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상호 연계하여 공개하며, 정보주체가 관련 권리를 쉽게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당사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보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보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 삭제합니다.

나.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 소각 등 물리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기술적 조치

-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2. 물리적 조치

-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통제 시스템(CCTV 및 보안업체의 경비시스템)운영,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관장소 및 전산장비의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설치

3.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취급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회사는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공개합니다.

②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 7일 전(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영상정보 포함)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당사 또는 다음의 기관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https://privacy.go.kr> (국번없이 118)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s://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3.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https://ecrm.police.go.kr> (국번없이 182)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방침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

본 방침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

본 방침은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신용) 정보 필수동의서

본 필수동의서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동 필수동의서의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동의는 완료됩니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공통 필수]

구분	내용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본인 여부 확인 ■ 금융사고 조사, 분쟁·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등
수집·이용할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직업, 국적, 생년월일 ■ 금융거래정보 : 계약조건(계약금액, 계약기간, 거래증권사, 계좌번호, 수수료율 등) 및 거래 내역 정보 ■ 투자자정보 :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통한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투자유형 등 ■ 기타 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투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동의 철회 시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위하여 별도 보관·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처리 수탁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무관리회사:
처리 목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투자일임계약자산의 기준가 및 수익률 산출 등 제관리
처리할 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명 및 수집·이용에 동의한 금융거래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또는 위탁업무 완료시까지만 보유·이용됩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제공 받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기관 및 정보집중기관·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 투자일임계약자산이 예치된 증권회사
제공 목적	■ 주문대리인 등록 금융사고 조세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
제공할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계약조건(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수료율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동의 철회 시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에 귀사가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위탁·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인/서명)

(동의자가 대리인인 경우)대리인 성명:

(인/서명)

[별지 3]

위 임 장

위임인 (본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수임인 (대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주 소			
<p>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현황 조회,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위임인 : _____ (인)</p> <p style="margin-top: 20px;">하이즈에셋자산운용(주) 귀중</p>				
<p><유의사항></p> <p>위임을 받은 자는 본 위임장과 본인(위임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별지 4]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결정 통지서

귀하

주소 :

정보항목			
접 수 일			
요구내용			
결정내용	[] 열람	열람 일시	
	[] 일부열람	열람 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열람연기	열람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 열람거절	열람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담 당 자	성명(직급 및 소속)		
	연락처(E-mail)		
그 밖의 안내사항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후 당사의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e-mail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p>-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이즈에셋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인)</p>			

[별지 5]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_____ 귀하

주소 :

당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유출 일자		
유출 항목		
유출 경위		
고객 대응 방안		
고객 피해 구제절차		
당사 대응조치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기타사항		

[별지 6]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기관명	하이즈에셋자산운용(주)				
정보주체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첨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하이즈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당사 출입 및 전산실 출입에 대한 확인

2.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대	출입문, 전산실

3. 관리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영제	전무	준법감시인	02-2039-523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전산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관리책임자에게 요구 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전산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사는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당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8. 기타 관련 사항

본 방침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방침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

본 방침은 2021년 6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별첨2]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최소화 방침

1. 목적

이 방침은 회사의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 가능한 정보를 구분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범위

회사가 수집제공하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말합니다.

3. 필수정보의 수집

3.1 공통 필수항목은 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명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1	이 름	• 사용자 구분을 위한 필수 정보
2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상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
3	집(직장) 주소	• 고객 통지 등을 위한 필수 정보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사업자의 경우는 직장주소 기입 의무)
4	연락처 (집,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중 복수 선택 가능)	• 고객 통지 등을 위한 필수 정보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5	직 업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 자금세탁방지법(제38조)
6	국 적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 자금세탁방지법(제38조)

*외국인, 주민번호 말소자 등 주민번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생년월일 및 성별정보를 추가 수집.

3.2 특정기준에 따른 필수항목은 업무별 특정기준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특성 : 강화된 고객확인업무(EDD)
- 정보명 : 거래목적, 예상거래, 특수관계자정보 등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5조의 2)

3.3 상품(계약)별 수집 필수항목은 회사가 상품(계약)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수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상품(계약)특성 : 투자일임계약
- 정보명 : 증권계좌번호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주문대리인으로서 주문실행을 하기 위한 필수정보.

4. 선택정보의 수집

4.1 선택정보는 수집하는 목적과 제공처, 선택정보 제공 시 혜택 등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하에 수집합니다.

- 선택항목의 동의는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고지하고 선택항목의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4.2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객 동의하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최소화

회사는 상품의 가입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최소한의 다음 항목에 한해 제공해야 합니다.

- 상품(계약)특성 : 투자일임계약
- 정보명 : 매매정보, 보유정보 등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투자일임 계좌의 회계처리 및 기준가 산정을 위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현재 하나펀드서비스(주))에 제공하는 필수 정보

6. 제3자 정보제공의 포괄적 동의 금지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를 구분하고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하여 필수적인 제3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자 정보제공처에 대하여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으며,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방침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3]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방침

제1장 개요

1. 목적

이 방침은 회사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주민번호 사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민번호 노출 또는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기준

이 방침은 시행일 이후 신규 수집·이용되는 주민번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민번호 암호화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시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적용범위

· 회사가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제2장 대면 거래

1. 주민번호 수집의 제한

- 1.1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개인정보 수집법정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 1.2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1.3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2. 서식의 주민번호 기재금지

- 2.1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계약서 등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를 금지합니다.
- 2.2 법령상 규정 준수 등 아래와 같이 주민번호 기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1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가. 법령상 주민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는 서식 작성.
 - 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고객거래확인서와 같이 법령상 주민번호 기입을 요구하는 경우
 - 다.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대리인 또는 상속인 정보가 필요한 서식 작성
 - 라. 양도 양수 또는 질권설정 등 삼자간 계약 관련 서식 작성
 -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주민번호가

기입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바. 위탁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서식 작성

제3장 비대면 거래

1. 주민번호 수집의 제한

1.1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한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개인정보 수집 법정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1.2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고객의 주민번호를 입력받는 경우는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1.3 기존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다른 고객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조합)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과도한 고객불편이 우려되거나, 고객 본인의 특징이 매우 곤란하여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주민번호는 저장하지 아니합니다.

1.5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가. 전화 녹취등에 의한 방법으로 주민번호 수집

제4장 주민번호 보관

1. 주민번호의 안전한 보관

1.1 주민번호를 입력받거나 주민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하거나 주민번호 뒷자리(생년월일 및 성별을 포함한 앞 7자리를 제외한 6개 뒷자리 번호)를 삭제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2 법령에 근거하여 고객 본인을 확인하거나 금융거래 증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방침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4]

개인(신용)정보 파기 방침

제1장 개요

1. 목적

이 방침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가 수집·이용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파기토록 하고, 지속적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보관방법 및 이용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 범위

회사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말합니다.

제2장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1. 파기 기준

1.1 회사가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거래종료 후 즉시(3개월 이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 다음 각목과 같이 법령에서 파기(또는 삭제)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즉시 파기(또는 삭제)하여야 함

가. "신용정보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

나. "신용정보법 제21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폐업시 금융감독원 직원 입회하에 신용정보 수록 파일 등 소거·폐기

1.2 거래관계 종료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3 고객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거래관계 종료 후 개인(신용)정보의 종류에 따른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파기(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5년
- 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3개월

1.4 고객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파기(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내방하여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7]

1.5 거래관계 종료일 경과 기간에 따라 파기(또는 삭제) 신청 결과 통지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거래관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p>※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p>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는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p>
② 거래관계 종료 후 3개월경과, 5년 이내
<p>※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p>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 삭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는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에 삭제되었음을 통보합니다.</p>
③ 거래관계 종료 후 5년경과 후
<p>※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p>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거래관계 종료 후 5년,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경과 시점에 삭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행 의무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됩니다.</p>

2. 1단계 보안조치

2.1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불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파기하여야 합니다.

- 학력, 직위, 결혼기념일 등 부가적인 신상정보가 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
- 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부가서비스를 위한 정보

2.2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조직의 접근 및 조회를 제한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등 보안통제를 강화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 1]

-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

3. 2단계 보안조치

3.1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전산원장에서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2호에 따른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2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음 각 호와 같이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주문기록 등 거래 관련 자료(10년),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10년),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관련 자료(10년), 투자권유 관련 자료(10년) 등
- ②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를 위한 채권 채무의 존재 확인 및 금융거래의 진실성 확보 등

4. 유의사항

4.1 개인(신용)정보 중 금융거래정보는 법령에서 파기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 이외에는 무분별하게 파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제2호 1단계 보안조치 및 제3호 2단계 보안조치에 따라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엄격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함

제3장 제3자 제공정보의 파기

1. 제3자 제공정보에 대한 통제

1.1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최소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경과 시 제3자가 파기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이전된 경우를 모두 포함

- 회사는 제3자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계약 체결 시, 구체적 기간과 파기 계획*을 명시하고, 불이행 시 제재(손해배상, 재계약 금지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예시) 파기대상 정보의 선정, 파기절차, 파기내역의 기록·보관, 파기결과에 대해 CP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등

- 개인(신용)정보 제공 대상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신용정보 보안 관리 대책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참고 2]에 있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별표4]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1.2 회사는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또는 수탁사에게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확인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여야 합니다.

- 수탁사의 CEO 등(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부터 파기 확인서를 요청하고, 제3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파기확인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행 시 제재방안에 따라 조치함

- 다만, 법령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3 회사는 수탁사에게 제공한 정보의 관리실태를 CEO 등(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이전된 경우에도 가능한 이행

제4장 분리보관 정보 활용시 통지

1. 분리보관 정보의 활용

1.1 회사가 거래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파기하지 않고 분리보관 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에 관한 사항*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 2의2 참고

* 통지방법은 서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이 가능(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참고)

·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제공시 고객에게 활용에 대한 통지를 함께 안내할 수 있음

1.2 다만,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38조의3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요청 기간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따른 제공,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 제공 등 제공 요구자가 특별한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사유1의 경우 제외)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음

* (사유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2)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사유3) 해당 통지가 질문·조사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방침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참고 1]

거래관계 종료 후 보안조치 방법

가. 1단계 보안조치 :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마케팅 목적 정보 등 금융거래 및 동 거래 관련 서비스제공과 무관한 정보는 모두 파기
 - 학력, 직업, 직위, 결혼기념일 등 부가적인 신상정보도 파기
- 다만, 이들 정보가 금융거래 및 동 거래 관련서비스 제공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는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안 통제를 강화
 - * (예) 각종 조회 화면에서 상거래관계 종료 고객정보는 조회를 차단
 - 영업조직에 대하여는 상거래관계 종료 고객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내부승인을 받고 접근을 허용
 - 금융거래원장에 상거래관계 종료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정보를 추가하여 조회 차단

나. 2단계 보안조치 : 상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경과 시

- 고객의 신용정보를 모두 전산원장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DB(또는 Table)로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 함. 고객의 주요신상명세*가 담긴 고객마스터파일(CIF : Customer Information File)만 전산원장에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
 - * 주민번호, 성명, 연락처 등
 - ** 식별번호(고객관리번호), 상거래관계 종료일 등만 남겨 상거래관계 종료고객임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
 - 별도 분리한 고객마스터 파일은 법령준수, 분쟁처리, 수사·검사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을 받고 처리하며,
 - * (예) 전산부서에 의뢰하여 처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조회 등
 - 강화된 접근통제(방화벽, IP, 또는 별도의 사용자계정 등)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수인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통제
 - * (예) 법무 담당직원, 금융정보제공 담당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등

[참고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 마.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제1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 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 마.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제1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마.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가.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 나.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